



(NOTE: This license has been superseded by the [Lucent Public License Version 1.02](#))

(주의사항: 본 라이선스는 [루센트 공중 라이선스Lucent Public License Version 1.02](#) 로 대체되었다.)

Lucent Public License Version 1.0

루센트 공중 라이선스 버전 1.0

The following is a Lucent license template. To generate your own, change the values of OWNER, ORGANIZATION, YEAR, and STATE from their original values as given here, and substitute your own.

다음은 루센트 라이선스 템플릿이다. 당신의 독자적인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시된 소유자와 기관, 연도, 주를 자신의 것으로 바꿔서 입력하라.

<ORGANIZATION> = Lucent Technologies Inc.

<OWNER> = LUCENT

<YEAR> = 2003

<STATE> = New York

<기관> = Lucent Technologies Inc.

<소유자> = LUCENT

<연도> = 2003

<주> = New York

Here is the license template:

라이선스 템플릿은 다음과 같다: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PUBLIC LICENSE ("AGREEMENT").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동봉된 프로그램은 이 공중 라이선스("계약서")에 의해 공급된다. 프로그램을 사용,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를 승낙했다는 의미를 구성한다.

1. DEFINITIONS

제 1 조. 정의

"Contribution" means:

"기여(물)" (이)란:

- a. in the case of <ORGANIZATION> ("**<OWNER>**"), the Original Program, and
- b. in the case of each Contributor,

- a. <기관:>("<소유자>")의 경우, 원본 프로그램, 그리고
- b. 각 기여자의 경우,

-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

- ii. additions to the Program;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Con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사항;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은 해당 기여자에 의해 생성 및 기여된다.

A Contribution is "Contributed" by a Contributor only (i)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and (ii) the Contributor explicitly consen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3C, to characterization of the changes and/or additions as Contributions.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어떤 기여물이 어떤 기여자에 의해 "기여"되는 것은, 그것이 (i) 해당 기여자 본인이나 해당 기여자를 대리하는 사람에 의해 프로그램에 추가되며, (ii) 기여자가 제 3 조 C 항에 따라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을 기여로 간주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물 중에서 (i) 별도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별도의 모듈들, 및 (ii)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파생저작물이 아닌 것은 기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OWNER> and any other entity that has Contributed a Contribution to the Program.

"기여자"란 <소유자> 및 프로그램에 기여물을 기여한 다른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Distributor" means a Recipient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modifications to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배포자"란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물 또는 그 일부를 배포하는 수취인을 의미한다.

"Original Program" mean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ftware accompanying this Agreement as released by <OWNER>, including source code, object code and documentation, if any.

"라이선스된 특허"란 기여물의 단독적인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의 사용이나 판매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가 가능한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Original Program" mean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ftware accompanying this Agreement as released by <OWNER>, including source code, object code and documentation, if any.

"원본 프로그램"이란 본 계약서와 동봉된, <소유자>에 의해 릴리즈된 소프트웨어의 원본 버전을 의미한다.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 및 문서가 있는 경우, 이들도 원본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Program" means the Original Program and Contributions or any part thereof

"프로그램"이란 원본 프로그램과 기여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란 모든 기여자를 포함하여, 본 계약서에 의해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GRANT OF RIGHTS

제 2 조. 권리의 부여

-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 a. 본 계약서의 규정에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그 기여자의 기여물이나 파생물을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코드의 형식으로 복제, 파생 저작물 작성, 전시, 공연, 배포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세계에서 사용료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 b.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e patent license granted by a Contributor shall also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at Contributor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granted by a Contributor shall not apply to (i)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r to (ii) Contributions of other Contributors.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 b. 본 계약서의 규정에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해당 기여자의 기여물을 소스 코드나 오브젝트 코드의 형식으로 작성,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기타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세계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특허 라이선스를 라이선스된 특허에 따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만약, 기여자가 기여물을 추가한 시점에 그러한 기여물의 추가로 인해 그 결과로 생성된 결합물이 라이선스된 특허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면, 기여자에 의해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해당 기여자의 기여물과 프로그램의 결합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기여자에 의해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i) 기여물을 포함하는 여타의 결합물이나 (ii) 다른 기여자의 기여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하드웨어도 그 자체로서 이 문서에 의해 라이선스가 설정되지 않는다.
- c.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 c. 수취인은 각 기여자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의 기여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특허나 다른 주체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각 기여자는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를 근거로 다른 주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수취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다. 이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라이선스를 행사하는 조건으로서 각 수취인은 필요한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지닌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어떤 제 3자 특허 라이선스가 요구된다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 d.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 d. 각 기여자는 자신이 아는 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본 계약서에 제시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충분한 저작권 권리를 지녔음을 선언한다.

3. REQUIREMENTS

제 3 조. 요구사항

A. Dis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any form under this Agreement or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A. 배포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본 계약서나 자신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임의대로 배포할 수 있다:

- a.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 a. 본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b. if the Program is distributed in source code or other tangible form, a copy of this Agreement or Distributor's own license agreement is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and
- b.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나 기타 실질적인 형식으로 배포된 경우, 본 계약서나 배포자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의 사본이 프로그램의 각 복제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 b. if distributed under Distributor's own license agreement, such license agreement:

- c.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 c. 배포자의 독자적인 라이선스 계약서에 의해 배포된 경우, 그 라이선스 계약서는:
 - i.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 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소유권, 비침해에 대한 보증 및 상품성 여부와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보증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부인하고;
 - ii.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and
 - ii. 모든 기여자를 대신하여 이익 손실과 같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특수하거나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를 포함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효과적으로 면제시켜야 하며;
 - i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 iii. 본 계약서와 상이한 조항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해당 기여자에 의해 단독으로 제공된다고 진술해야 한다.

B. Each Distributor must include the following in a conspicuous location in the Program:

B. 각 배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프로그램 내에 눈에 띄는 위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Copyright (C) <YEAR>, <ORGANIZATION> and other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C) <연도>, <기관명> 및 기타. 모든 권리를 보유함.

C. In addition,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and indicate its consent to characterization of its additions and/or changes as a Contribution,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Once consent is granted, it may not thereafter be revoked.

C. 또한, 각 기여자는 후속 기여자가 기여물의 창작자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신이 기여물에 대한 창작자임을 밝히고, 자신의 추가물이나 변경물이 기여물로 간주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를 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4. COMMERCIAL DISTRIBUTION

제 4 조. 상업적 배포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Dis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Dis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Distributor ("Commercial Dis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Dis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Dis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Dis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Dis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최종 사용자, 사업 파트너 등에 대하여 특정한 책임을 수용할 수 있다. 본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업적 제품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배포자는 이로 인해 다른 기여자들에 대한 잠정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배포자가 프로그램을 어떤 상업적 제품의 제공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배포자("상업적 배포자")는 제 3 자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 및 기타 법적인 조치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 및 비용(총괄하여 손실)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상업적 제품의 제공으로 배포한 것과 관련된 상업적 배포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한 정도까지, 다른 모든 기여자("면책 기여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있는 의무들은 실제 또는 주장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요구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을 얻기 위하여 기여자는: a) 상업적 배포자에게 그러한 청구에 대해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b) 방어를 비롯한 관련 화해 협상에 있어서 상업적 배포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배포자와 협력해야 한다. 면책 기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배상요구에 참여할 수 있다.

For example, a Dis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Dis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Distributor. If that Commercial Dis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Dis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Dis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Dis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예를 들면 어떤 배포자가 프로그램을 Product X 라는 상업적 제품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포자는 상업적 배포자가 된다. 해당 상업적 배포자가 이행 청구를 하거나 Product X 에 관련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행 청구 및 보증은 그러한 상업적 배포자의 단독적인 책임이다. 이 조항 하에서 상업적 배포자는 그러한 이행 청구 및 보증에 관련되어 다른 기여자를 상대로 발생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다른 기여자에게 손해에 대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배포자가 그 손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NO WARRANTY

제 5 조. 무보증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침해, 상품성 여부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본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및 손실, 운영 불능 및 중지로 인한 위험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6. DISCLAIMER OF LIABILITY

제 6 조. 책임의 부인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이나 기여자 중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 혹은 여기에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이익손실을 제한 없이 포함)에 대해, 발생 원인이나 책임론, 무과실 책임 또는 (과실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GENERAL

제 7 조. 일반 사항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 하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이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당사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 Contributor with respect to a patent applicable to software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by that Contributor to such Recipi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In addition,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수취인이 어떤 기여자를 상대로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교차 청구 및 반소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 그 기여자에 의해 본 계약서에 따라 해당 수취인에게 부여된 모든 특허 라이선스는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종료된다. 또한, 수취인이 어떤 주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과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의 결합물은 제외)가 해당 수취인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소송상의 교차청구 및 반소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 2 조(b)항에 따라 부여된 해당 수취인의 권리는 그 소송이 제기되는 날에 종료된다.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의 조항과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기한 내에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종료된다.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모든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에,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취인이 부여한 라이선스는 지속되고 존속되어야 한다.

<OWNER> may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No one other than <OWNER>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소유자>는 때때로 신규 버전(개정 버전 포함)을 공표할 수 있다. 각각의 신규 버전은 버전 번호로 구분된다. 프로그램(기여물 포함)은 항상 그것이 양도된 시점의 계약서 버전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의 신규버전이 공표된 이후에는 기여자가 선택적으로 신규버전에 따라 프로그램(기여물 포함)을 배포할 수 있다. <소유자>를 제외한 누구도 본 계약서를 수정할 권리가 없다. 위의 제 2 조 (a)항 및 (b)항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혹은 금반언이나 기타 방법으로 이 계약서에 따른 기여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나 라이선스도 인수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 내의 모든 권리는 보유된다.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STATE>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이 계약서는 뉴욕주의 법률과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계약서에 대한 어떤 당사자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계약서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각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발생한 소송에서 심리 배심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